명예훼손적 사실이 함축된 보도는 비록 의견 내지 의문의 제기 형식으로 행해진 것이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Weller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283 CalRptr 044(**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1991)

사건개요

피 항소인 Welter 는 1982 년 부유한 귀부인으로부터 저명한 은세공자인 Paul Storr 가 제작한 두 개의 희귀한 장식용 촛대를 대금 45,000 달러에 매수하였다. 당시 매도인은 통상 골동품계에서 흔한 요구대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Veiler 는 구입한 촛대들을 일부 구멍을 뚫고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의 수리를 한 후 9 개월 정도 후에 요구가격을 90,000 달러로 하여 가게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다가 1983 년 1 월 de Young 박물관이 65,000 달러에 위 촛대를 구입하였다. 당시 Welter 는 위 박물관에 촛대상의 전기충격 및 기타 하자사실을 고지하였다.

Weller 는 종전 소유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위 촛대가 약 40 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제공하였다. 약 1 년 후 항소인민 American 방송회사가 운영하는 KGO-TV 의 뉴스부국장인 Andrew Shinnick 는 위 촛대에 대해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물관이 전기충격 등 수리를 한 촛대임에도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덧붙여 몇 년 전 작고한 저명한 여류건축가인 Barbara Herbert 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위 촛대와 유사한 한 쌍의 촛대를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다투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이 포함된 일련의 방송을 내보냈다. 「피항소인이 박물관에 도난품인 촛대를 팔았다… 엄청나게 가격을 부풀려서(at agrossly inflated price) 촛대를 팔았다…제작자, 물품의 상태, 출처,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 박물관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피항소인은 촛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서 최근 은세공품에 관련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Jerry Durham 의 동업자이다… 부적절히 촛대를 수리하였다…촛대의 배경을 밝히는데 (항소인과의) 협조를 거절하였다…피항소인은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기망했다.」 이러한 방송보도가 있은 후 feller 는 캘리포니아주 마틴도지방법원(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Martin County)에 제소를 한 바 이에 대해 배심원의 일반적 평결(general verdict)은 항소인은 Welter 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100 만 달러의 일반적 손해액(general damages)과 신용에 대한 입증된 침해(proved injury)에 대하여 50 만 달러와 신용에 대한 추정된 손해액(persumed damages) 으로 50 만 달러의 지급을 선고하고, 징별적 손해액(punitive damages)에 대하여는 인정치 아니하였다. 위 일반적 평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실인정내용(answers to special interrogatories)은, 첫째, 배심원들은 통상의 시청자가 그 방송이 Veiler 에 대하여 1 개 이상의 명예훼손적 보도를 한 사실을 이해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함축적 진술이 실질적으로 허위(false)이다. 둘째, 방송사 측의 철회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셋째, 방송사측은 이러한 진술이 증거법상 면책된다고 항변하나 방송사측은 허위임을 알았든지 진실을 경솔히 무시하는 등 면책특권(privilege)을 배척하기에 필요한 일종의 악의(malice)에 기해 행동하였다. 다만 징벌적 손해액을 부과할 정도의 악의의 존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이다. 항소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판결요지

Newson 재판장, Smith 판사, Stein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원고의 골동품 촛대를 박물관에 매도한 사실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내용은 원고가 도난물품이라는 것을 알고 팔았거나, 적어도 촛대의 출처에 관하여 기망하였으며, 그 물품에 엄청나게 부풀린 값으로 팔았다는 등 명예훼손적 진술을 암시하며, 방송내용의 문맥 및 취지를 보아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고의 형식적 체제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진술이 실제적 사실(actual fact)의 주장이라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미심쩍어 하는 투의 용어(interrogative language)를 사용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에 대하여 헌법상 보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연방수정헌법 제 1 조 하에서 부여되는 정도 이상으로 「의견」(opinion) 또는 「추측」(conjecture)이라고 주장된 발언을 보호하지 않는다.

3. 캘리포니아주 사실심법원은 배심원이 통상의 시청자가 방송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어학교수의 전문가적 증언을 허용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방송내용의 함축된 의미에 관하여 은세공전문가 문외한으로서의 의견(lay opinion)을 증언하도록 허용한 것 역시 아무런 과오가 없다.

4. 달리 해석될 수 있고(equivocal) 완전하지 못한(incomplete) 철회(retraction)는 비록 주장된 명예훼손적 진술과 같은 정도로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철회관계법령인 민사법전 제 48 조 제 a 항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배심원에게 평결전 법률상 문제에 관하여 지시를 함에 있어 「철회는 충분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회피적이거나 달리 해석 가능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분적이든지 잘못의 시인을 주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암시가 내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것은 명예훼손적 진술 또는 암시에 의해 야기된 모든 잘못을 치유하기 위한 정직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무런 과오가 없다.

5. 배심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100 만 달러, 신용의 입증된 침해에 대한 50 만 달러, 신용의 추정된 손해액으로 50 만 달러의 평결은 배심원이 감정 또는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따른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현실적 손해액의 선고가 추정된 손해액의 선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이유

I. 헌법상 면책

항소인은 25 개의 특정진술이 사실적 진술이 아니라 「의견」을 구성하고 따라서 연방헌법상 면책되므로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증거 제출전 증거능력심사신청(motion in limine)을 거부한 사실심법원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연방최고법원은 최근 별도의 헌법상 특권이 의견의 진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1005.Ct. 2695(1990)). 연방최고법원은 「의견」의 표현이 「종종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의 주장을 내포한다」고 판만하여, 「진술자가 의 견의 근거 되는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든지, 사실의 평가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은 사실의 허위주장을 여전히 내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이 종래의 전통적인 사실과 의견의 구별관념에 그대로 통용될 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영향은 두고 볼 일이지만 이러한 Milkovich 판결후의 경향은 보다 자주 주장된 명예훼손적 진술이 헌법상의 보호의 범위밖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Milkovich 판결에서 인정하듯이 법원으로서는 명백히 풍자적(satirical), 과장적(hyperbolic), 상상적(imaginative)인 것이든지 또는 수사적(rhetorical)인 진술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인이 본건 방송내용이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주장은 위 판결에 비추어 이유없다.

나아가 위 판결이 「언론의 자유의 생존영역은 기존의 헌법상 원리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첫째, 증명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적 판시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의 관심(public concern)사항에 관련된 의견의 진술은 충분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합리적으로 보아 개인에 대한 실제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보호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히 비유적(figurative) 또는 과장적(hyperbolic) 언어로 표현되고, 그 진술의 문맥과 내용으로 보아 발언자가 실제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상당하게 유지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변내용에 따라 세목별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방송내용은 명예훼손적 진술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즉 이 사건 뉴스보도는 Weller 가 알고서 도난물품을 de Young 박물관에 팔았고, 적어도 출처에 관하여 기망하고, 엄청나게 부풀린 가격으로 팔았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항소인은 이러한 방송내용이 단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상반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듭된 유보적 입장(the repeated qualifications)을 밝힌 바 있으므로 통상의 시청자가 방송내용이 Weller 의 명예를 결코 비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유없다.

2. 방송내용의 문맥이나 내용으로 보아 명예훼손적 진술이 현실적인 사실의 주장이라는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장 또는 풍자와는 달리, 외관상(apparently) 객관적이고(objective) 중립적인(neutral) 것으로 보이는 보도에 있어 그 배경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내포된 진술의 공표는 사실(factual)인 것으로 거의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앞서 Milkovich 판결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의 주장에 앞서 「내 견해로서는」(in my opinion)이라는 말을 부가함으로써 발언자로 하여금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 절연케 한다는 관념을 배척한 것과 같이, 당재판부에서도 단지 「외관상」(apparently) 또는 「일부 출처에 의하면」(some sources say) 또는 의문제기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신중한 용어로서 완곡하게 진술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연자가 현실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인상을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미심쩍어 하는(inter-rogative)투의 말의 사용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명예훼손적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에 헌법상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당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데 따른 이익은 이미 보통법상의 「정당한 논평」(fair comment)의 권리 및 Milkovich 판결에서 열거되고 있는 다른 연방헌법상 보호규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함축된 명예훼손적 사실은 「입증가능한 허위」(provably false)이다.

Milkovich 판시상 명예훼손적 진술이 「입증가능한 허위」인지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된 명예훼손적 진술이 실질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만 관련되며, 피고가 그 진술이 행위시 허위인지를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다든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II . 명예훼손의 의미에 관한 전문가 및 문외한의 증언

항소인은 언어학교수인 Lakoff 박사의 증언은 배심원이 공통경험의 범위를 충분히 벗어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증거법 제 8 조상 전문가증언의 채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증언의 사항에 대하여 배심원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비록 배심원이 그 사실에 대해 일정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도움」(assist)이 된다면 전문가증언이 받아들여진다. 단지 그것이 통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일반인이 전문가가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별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공통경험사항의 하나로서 공통적 정보내용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나아가 은세공전문가인 Anthony Phillips 가 방송내용의 함축적 의미에 관한 문외한의 의견진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Phillips 의 증언은 자신의 직업에 정통한 은세공전문가로서의 자격으로 진술한 것이고, 방송내용의 성격에 관한 진술은 단지 그러한 함축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이 은세공취급자로서의 피항소인의 신용을 훼손할 것인지에 관한 그의 견해의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서만 허용된 것이다.

III.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상의 잘못

1. 입증책임에 관한 지시

항소인은 사실심법원이 배심원에 대하여 평결 전 지시에 「사소한 부정확성(minor inaccuracies) 또는 사소한 구체적 언급의 누락(omissions of minor details)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암시가 실질적으로 허위임에 대한 원고의 증명책임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정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단지 원고가 명예훼손적 진술이 실질적으로 허위(substantially false)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지시한 과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2. 철회의 충분성

달리 해석될 수 있다든가(equivocal), 불완전한(incomplete) 철회는 비록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진술과 같은 정도로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철회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손해배상액감경에 있어 그것이 완전하게(fully), 정당하게(fairly) 그리고 신속히(promptly)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불편부당한 제 3 자(an impartial person)의 입장에서 그 사건 하에서 합리적 (reasonable)이고 만족스런(satisfactory)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이 「정정보도가 법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것이기 위하여는, 그것이 완전하고(full) 완결적(complete)이어야 하며, 회피적(evasive) 또는 달리 해석가능한(equivocal)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부분적(partial)이거나 시인을 주저하는(hesitant) 것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암시를 내포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명예훼손적 진술 또는 암시에 의해 야기된 모든 잘못을 치유하려는 정직한 노력(an honest endeavor)이어야 한다」는 지시는 정당하다.

Ⅳ. 손해배상액

항소인은 신용에 대한 현실적 손해 및 감정적 손상에 대한 증거는 배심원의 평결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금액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선고는 과도한 것이고 나아가 배심원은 입증된 손해 외에 신용에 대한 침해의 추정된 손해액을 보고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다투고 있으나, 당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Veiler가 신용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 이 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 방법을 제출하였고, 선고된 배상액의 정도가 사실상 높은(indeed high) 것이기는 하나 배심원이 감정과 편견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에 따른 부적절한(out of proportion)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추정된 손해액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원고가 명예훼손적 진술이 「허위성을 진실하든지 진실성의 · 경솔한 무사로 공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배심원은 Weller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충족하였다고 판만한 것이므로 이러한 추정된 손해액의 선고는 정당하다.

Ⅴ. 결론

원심의 판결을 인용한다.